

수원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단5722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서수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8. 5.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49,287,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9,2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2018. 5. 9.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단13573호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26. 'C은 원고에게 153,2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의 모친인 피고와 2018. 5. 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8.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D 명의로 2018. 6.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8. 6. 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이다. 위 매매 관련 등기부상 거래가액 합계는 1,123,21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발생 이후 C이 2018. 5. 9.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인 2/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이를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의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의 시가 합계는 449,287,2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537,033,190원[=원금 153,231,000원 + 지연손해금 383,802,190원]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항 중 더 적은 금액인 449,287,2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449,28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

(별지)

목 록

1. 강원도 원주시
2. 답 817㎡
3. ,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93.24㎡, 2층 96.01㎡
4. 대 281㎡
5. 대 136㎡
6. 답 2056㎡. 끝.

